

장학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3.01.

제1조 (목적)

장학에 관한 기본방침, 장학금배정 및 선정, 기타 장학금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.

제2조 (기능)

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- ①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
- ②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- ③ 장학생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- ② 위원 중 학생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5인내외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.
<개정 2022.03.04., 2024.03.01.>

제4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학부서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9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.

제10조 (경비등 지원)

- ①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지침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4.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